

의안
번호

45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51호
- 다. 제출일자 : 2025. 04. 04.
- 라. 회부일자 : 2025. 04. 10.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별정직6급 → 일반임기 제6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 1,582명 → 1,583명 (+1명)

- 6급 이하 : 1,502명 → 1,503명 (+1명)

○ 별정직 계 : 9명(본청5명, 구의회사무국4명) → 8명(본청5명, 구의회사무국3명) (△1명)

- 6급상당이하: 8명(본청4명, 구의회사무국4명) → 7명(본청4명, 구의회사무국3명)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20. ~ 2025. 03. 23.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5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으로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를 정하고 있음.
- 우리 구의회는 의원정수 25명 이하로 전문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5급 2명, 6급이하 3명 이내로 둘 수 있음.

【별표 5. 시·군·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직급 중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일반임기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총 정원수는 1,592명(정무직1, 일반직1,583, 별정직8)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고, 일반직은 6급 이하 1명이 증가하여 1,502명에서 1,5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하는 것임.

<개정 전>

<개정 후>

[별표3]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92	1,592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82	1,582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9	33	2	14	20
6급 이하	1,502	1,502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9	5	4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8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92	1,592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9	33	2	14	20
6급 이하	1,503	1,503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8	5	3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7	4	3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의회 인력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정원 운영방안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급 중 별정직 6급 상당 2명 중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 논의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서울시 자치구의회 전문위원 직급별 현황	
행정·별정직만 있는 자치구의회 (13개 의회)	임기제 포함 자치구의회 (12개 의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영등포, 관악, 송파, 강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서초, 강남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